■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23.>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45조 관련)

1.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가. 원자로시설의 위치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나.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다. 원자로시설의 응력분석 등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라.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결과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마.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년

2.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원자로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10년
2) 영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31조의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10년
나. 운전기록		
1) 열출력 및 노심에 있어서의 중성자속밀도 및 온도	연속적으로	10년
2) 원자로 본체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냉각재의 온도·압력 및 유량	운전 중 1시간마다	10년
3) 제어재의 위치	운전 중 1시간마다	1년
4) 원자로에 사용하는 냉각재 및 감속재(유체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순도 및 매일 공급량	매일 1회	1년
5) 원자로(임계실험장치는 제외한다) 안에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배치 및 교체 내용	배치 및 교체한 때마다	10년
6) 원자로(임계실험장치는 제외한다) 안에 있는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재 및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의 반응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위하여 장전하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장전한 때마다	1년
7) 운전개시 전 및 운전정지 후의 원자로 시설의 점검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8) 운전개시 · 임계도달 · 운전교체 · 긴급차단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등을 한 때마다	1년
9) 운전책임자 및 운전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1년
다. 핵연료물질의 기록		
1)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물질은 제외한다)의 원산지별, 종류별, 인계 · 인수상대자별 인계 · 인수량 및 인계 · 인수사유	인계 · 인수한 때마다	10년
2) 핵연료집합체의 종류별 장전량	장전한 때마다	10년
3) 핵연료물질의 재장전 시 원산지별, 종류별 주기간 연소도 및 특수핵물질 생성량	매월 1회	10년
4) 사용후 핵연료의 원산지별, 종류별, 상태별 인계 · 인수량 및 원자로에서 인출 시부터 사업소 외로 반출 시까지의 기간 및 반출 시의 방사선량	반출한 때마다	10년
5) 핵연료물질의 원산지별, 종류별 분실 또는 손실된 수량 및 이유	분실 및 손실이 발생한 때마다	10년
6) 핵연료집합체의 형상 또는 형상에 관한 검사 결과	재장전 및 인출한 때마다	10년
라. 감속재물질의 기록		
1) 감속재물질(규제물질만 해당한다)의 종류별 및 상태별 인계 · 인수량	인계 · 인수한 때마다	10년
2)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분실 또는 손실된 수량 및 사유	손실이 생긴 때마다	10년
3)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처리 · 저장량 및 방법	처리 · 저장한 때마다	10년
4)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재고량	매월 1회	10년
마.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원자로본체, 사용이 끝난 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저장 및 배출시설 등의 방사선차폐벽 외 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	운전 중 매일 1회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1일간 및 3개월간의 평균농도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0)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할 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11)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2) 원자로운전요원의 교육훈련 실적	교육을 한 때마다	5년
13)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1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량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매분기 1회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바.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기록		
1)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결과와 담당자 성명	매월 1회	1년
2) 원자로시설의 보수결과와 담당자 성명	보수한 때마다	1년
사. 원자로시설의 이용기록		
1) 이용의 목적 및 방법과 이용한 방사선의 방사선량률	이용한 때마다	1년
2) 원자로에 장전한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장전한 때마다	1년
3)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4)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5) 사고의 원인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6) 사고 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

		체할 때까지
아.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자.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		
1) 계측제어계통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및 긴급차단 검사의 기록	검사한 때마다	10년
2)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교정에 관한 기록	매년 1회	10년
차. 원자로조종면허자 관리 기록		
1) 별표 4의3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건 이행 현황	매월 1회	해당 종사자가 퇴직할 때까지
2)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별표 4의3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치한 사항	조치한 때마다	해당 종사자가 퇴직할 때까지

2의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다.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의 결과(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마. 영 제55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년

3.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10년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때마다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2)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5)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9)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0)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유지관리의 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점검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검사한 때마다	3년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검사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3)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검사한 때마다	3년
마. 정련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사고 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변환 또는 가공시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2) 영 제64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10년
2)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	매주 1회	10년

면의 오염도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9)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10)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운전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총반입량	반입한 때마다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의 온도·압력 및 유량	연속적으로	1년
3) 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와 운전원의 성명 및 근무교대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마. 유지관리의 기록		
1) 시설의 순시 및 점검상황과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시설의 보수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바. 변환 또는 가공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사고 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5.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2) 영 제64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운전 중 매일 1회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 평균농도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성폐기물의 해양방출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방출량과 평균농도	1일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1일간의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5) 해양방출구 주변 해역의 해수, 해저토, 해양생물 등 해양시료 중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농도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7)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10)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11)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13)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4)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운전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총반입 및 그 일시	반입한 때마다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온도·압력 및 유량	연속적으로	1년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 및 운전종사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1년
마. 유지관리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 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보수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5년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수시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조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6. 핵연료물질사용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연료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시설검사기록		
영 제7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사용시설 등의 방사선차폐체 외부표면의 방사선량률	작업 중 매일 1회	5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마다(연속적으로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에는 연속적으로)	5년
3)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5년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의 건강진단기록		
10)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11)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2)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유지관리기록		
1) 사용시설 등의 순시 및 점검 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사용시설 등의 보수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5년
마. 사용시설 등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상황 및 사고조치 내용	수시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조치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핵원료물질사용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원료물질의 종류별 인수·인도량 및 재고량	인수·인도량 및 재고량이 변동된 때마다	5년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5년
2)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5년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9)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0)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다.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수시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조치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 · 장소 · 방법 · 목적 · 종사자성명 · 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 · 처리 · 저장 및 배출기록(일시 · 장소 · 방법 · 종사자 · 성명 · 종류 및 수량)	보관 · 처리 · 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사용, 분배, 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5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9)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입 또는 판매기록(일시 · 종류 및 수량)	구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 · 처리 · 저장 및 배출기록(일시 · 장소 · 방법 · 종사자 성명 · 종류 및 수량)	보관 · 처리 · 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배 · 저장 · 보관 · 처리 및 배출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매분기 1회	5년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9)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10.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폐기물기록		
1) 인수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인수한 때마다	영구
2)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일시 및 인수장소	인수한 때마다	영구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및 처리방법·일시	처리한 때마다	영구
4) 처분시설에 영구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분방법·처분위치 및 총방사능 농도	영구처분한 때마다	영구
5)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처리시설, 처분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과 공기 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매분기 1회	5년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다. 폐기시설등의 검사기록		
1)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10년
2)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3)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라. 운영유지관리의 기록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점검·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및 보수한 때마다	·순시·점검: 1년 ·보수: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마. 폐기시설등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수시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 후 조치 내용	조치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바. 환경감시		
1) 시료채취 장소 및 일시	시료채취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2) 시료분석 방법 및 결과	시료분석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3) 환경방사선 측정방법 및 결과	측정한 때마다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11. 판독업무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피폭방사선량 평가 관련 자료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판독의 기초자료	평가한 때마다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가)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소자별 반응 및 스펙트럼 등의 기초 자료		
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피폭 이미지가 영구 기록된 해당개인선량계		
2) 개인피폭 방사선량 측정결과	평가한 때마다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나. 판독장비의 검사 및 교정기록	검사 및 교정한 때마다	5년
다. 영 제115조에 따른 판독검사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12.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업무대행 실적		
1) 업무대행 내용 및 기간	업무 대행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

		까지
2) 방사선작업 내용 및 결과	업무 대행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대행 실적	업무 대행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
2)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
4)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